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2. 19(금) 10:00

제2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
운영에 관한 조례안
(경제환경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50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2. 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2. 8.

2. 제안이유

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상품권 발행 및 이용활성화 조치(안 제4조 ~ 제6조)
- 다. 판매대행점 · 운영대행사의 협약 및 관리(안 제7조)
- 라.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, 환수 조치(안 제8조 ~ 제9조)
- 마. 과태료 부과사항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4항, 제6조제1항~제3항, 제7조제1항, 제7조제2항제3호, 제7조제4항, 제8조제2항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합 의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: 2020. 12. 28. ~ 2021. 1. 18.(20일 이상)
 - 2) 비용추계서: 별첨

- 3) 규제사전심사: 별도시행
- 4) 부패영향평가: 별도시행
- 5) 성별영향평가: 별도시행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출 배경

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 ~ 제3조)
- 2) 상품권 발행 및 이용활성화 조치(안 제4조 ~ 제6조)
 -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,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, 권면금액은 1만원권, 5만원권, 10만원권으로 정함.
 -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고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.
- 3) 판매대행점·운영대행사의 협약 및 관리(안 제7조)
- 4)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, 환수 조치(안 제8조 ~ 제9조)
- 5) 과태료 부과사항(안 제10조)

다. 검토의견

- 지역사랑상품권은 1999년부터 지역화폐, 고향사랑상품권,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, 2018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했고, 2020년 5월에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.

- 2021년 1월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총 15곳임.
- 본 조례안은 금천구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판매대행 및 운영대행사에 대하여, 상품권의 판매·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,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 금지, 수시 현장점검, 부정유통 신고, 과태료부과 등 지역사랑 상품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, 권면금액,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6조(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)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
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

3.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,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8조(가맹점 등록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

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
2.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3.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판매·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·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8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조(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) ① 국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,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,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도(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)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할인·판매·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